

# 「평창군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김광성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5. 13.
- 회부일자 : 2024. 5. 17.
- 상정일자 : 2024. 5. 17.

### 2. 제안이유

-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과 평창군의 쾌적한 환경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축산농가의 책무(안 제4조)
-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(안 제5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축산법」 제3조에서 지자체는 축산환경 개선 및 축산분뇨 처리·자원화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군수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가축분뇨 자원화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평창군의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려는 것임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(책무)에서 군수의 책무로 축산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,  
안 제4조(축산농가의 책무)에서는 축산농가의 책무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5조(지원)에서는 우리 군의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### < 축산환경 개선사업 >

1. 가축분뇨 퇴비, 액비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
2. 축산악취 관리가 어려운 노후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
3. 개별 축산농가 실정에 맞는 축산환경컨설팅
4.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지향하고자 축산환경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합당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□ **축산법**

**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**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·증식, 토종가축의 보존·육성, 축산환경 개선, 축산업의 구조개선,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·가격안정·유통개선·이용촉진, 사료의 안정적 수급,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,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42조의13(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)**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·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·군·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,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축사의 설치·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
2. 축산악취,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□ **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**

**제3조(축산발전시책의 강구)**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가축분뇨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